

# 청약 안내문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정

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2024.08.12. (월)	- 인터넷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일시 : 2024.08.21.(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 특별공급 청약자격

구분	청약 가능면적	공급 비율	세대주 자격	청약통장 조건		청약자격	소득요건 (전년도 가구원수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기준)	주택 소유여부
				해당지역	기타지역			
기관 추천	전용 85㎡ 이하	10% 이내	무관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단,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해당 지역 기관장 추천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없음	세대원 전원 무주택
생애 최초		9% 이내	무관		모집 공고일 기타지역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현재 혼인중 혹은 자녀가 있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신생아* 우선공급(15%)130% 이내 ②신생아 일반공급(5%)160% 이내 ③우선공급(35%)130% 이내 ④일반공급(15%)160% 이내 ⑤추첨제(30%)	
노부모 부양	전 타입	3% 이내	필요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모집공고일 해당지역 거주 (창원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없음	세대원 전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		10% 이내	무관			만 19세 미만 직계자녀 2명 이상인 자(태아포함)		
신혼 부부	전용 85㎡ 이하	18% 이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소득기준 충족한 자	①신생아 우선공급(15%)100% 이내(맞벌이 120%) ②신생아 일반공급(5%)140% 이내(맞벌이 160%) ③우선공급(35%)100% 이내(맞벌이 120%) ④일반공급(15%)140% 이내(맞벌이 160%) ⑤추첨제(30%)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합니다.(2024.03.25. 개정)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만)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신청자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 신청자 및 배우자가 함께 청약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합니다.(2024.03.25. 개정)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24.03.25. 개정) : 신생아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인 자녀를 뜻함.

청약 통장	예치금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창원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 기준 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제외				
종류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자격 제한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사실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직계존속 배우자포함)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봅니다.(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직계손족(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서식은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정보제공을 하기위하여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인쇄 및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있을수 있으며,

혼돈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질의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을 근거로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